

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(김태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2.

발의자 : 김태욱, 강혜순, 박경흠,
홍영진, 문희성, 이명녀,
정재환, 김도운, 문기호,
안영호

1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안전보안관 위촉,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, 안전보안관의 활동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(안 제7조)
- 마.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(안 제8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예고: 2022. 11. 24. ~ 12. 1.(8일간)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안전보안관”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
2. “안전문화활동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안전보안관의 위촉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,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.

1. 재난·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
3. 관내 공공기관, 학교,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
4. 재난·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
5.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

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나이, 성별, 계층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)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

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)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(이하 “대표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한다.

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,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6조(안전보안관의 활동)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
2.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
3.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안전보안관 활동 지원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)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,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1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
3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부적합한 경우
4. 그 밖에 질병,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조례 등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3. 작성자

- 소 속: 안전총괄과
- 직 급: 지방행정서기보
- 이 름: 배준선
- 연락처: 290-4057